

- 신세원 발굴을 위한 - 수상시설물에 대한 과세방안

한 정 옥

충청북도 괴산군 지방세무주서보

I. 서론

1. 연구의 동기

가용소득의 증가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전국적 도로망 확충 등에 힘입어 레저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 실시 이후 레저관광의 수요가 10.8%에서 21.6%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레저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육지, 내수면, 바다를 망라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지와 레저시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저수지나 바다 등 수상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과거에는 주로 낚시터용으로 사용하고자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한 밑바탕에 비와 햇빛을 가릴 정도의 단순한 형태의 시설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었지만 수상관광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광수요자의 편의시설욕구를 충족을 위해, 점차 대형화·고급화되면서 지금은 지상의 건축물에 못지않은 규모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상시설물은 수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건축물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가 없다.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 당연히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못하는데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레저나 관광수요의 확대로 수상에 설치되는 수상시설물의 고급화 및 개소 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세대상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지상 건축물과 유사하게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지방세 과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수상시설물은 현재 내륙의 관광명소인 강원, 경기, 충청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수상시설물의 정확한 설치 및 운영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내수면이나 바다 등의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수상시설물 설치 제한 방침과 달리 현재는 내수면이나 바다의 오염의 최소화를 충족하는 수상시설물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모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수상시설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수상시설물에 대한 과세는 ‘신세원을 발굴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범위, 과세자료 관리 방법,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적용세율 등 과세에 필요한 항목을 결정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존하는 수상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수상시설물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과세자료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지상 건축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적정한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및 세율을 도출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II. 신세원 발굴

1. 신세원 발굴¹⁾의 개념

1) 남황우, "자주세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지방세」, 2006, 제5호, (통권97호), p5

신세원 발굴은 지방세수의 비중을 높여 보다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지향하지는 것이다. 과세대상의 확대는 신세원 발굴, 세원이양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신세원 발굴은 현재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성격상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세대상을 찾아 이를 지방세로 도입해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을 지방세에 추가할 경우에는 세목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세목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2. 신세원 발굴의 필요성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02년에는 54.8%, 2010년 52.2%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서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3.1%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와 자치행정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시급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사회복지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세원 발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가능하게 한다는 재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2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시 수입 인센티브 항목에 지방세 세원발굴을 추가하여 신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신세원 발굴은 현행 법령과 제도상 용이한 일이 아니며,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신세원 과세대상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고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조세저항의 소지가 적고, 유사한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과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 신세원 발굴의 문제점

신세원 발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법령 개정과, 당해 세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 중복과세 및 이중부담의 문제

그 동안 신세원으로 검토되어 온 환경보전세를 살펴보면 현재 각각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보전세의 대상에 대해서는 오염배출업체에 배출부과금, 환경개선금, 폐기물예치금,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세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복과세 금지원칙을 규정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과세자주권과 상충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세체계를 갖추 수는 없다.

지방세의 기간(基幹)세목은 보편성, 안정성, 자기부담의 원칙 등 조세원칙 및 경제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편, 안정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지역성과 응익성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법정세목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신설가능한 지방세인 법정외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 재원 배분 · 귀속문제

신세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시·도세로 할 것인지 시·군·구세로 할 것인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예로 ‘청도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과세의 경우를 보면, 시설투자 등 비용부담은 대부분 청도군에서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레저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세수는 경상북도에 귀속된다.

우권판매액의 10%인 레저세는 경상북도 85%, 청도군 15% 비율로 배분됨으로서 청도군의 세수증대

에 별다른 영향을 못하고 있다.

4. 신세원 발굴의 대상세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부존자원을 대상으로 신세원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예로서, 강원, 제주, 충북, 경북 등에서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세 과세방안, 경기, 경남의 골프장, 온천 등이 있는 지역에 온천세 과세방안 등이 건의되고 있다.

2010년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에 과세하는 레저세 과세 대상 물건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체육계가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표 1】 지방자치단체별 신세원 발굴노력

세 목	내 용	해당지역
관광세	*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해 입장료의 10%를 관광세로 부과 * 시군 관광자원이나 호텔의 유가점 유흥업소 수입의 일부를 관광세로 징수	강원, 제주, 충북, 경북 등
광고세	지역방송이나 옥외시설물 등의 광고료에 10%의 광고세 부과	서울, 대전, 대구 등
입도세(入島稅)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입도세 징수	제주, 홍도, 독도 등
온천세	골프장, 온천 등이 있는 지역에 부과	경기, 경남 등
벌크화물세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인천
내륙컨테이너세	내륙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기 의왕시
컨테이너세	신항 공업항의 처리능력 향상자원마련을 위해 컨테이너세 부과	울산시, 여천시
시멘트제조세	시멘트 1부대 가격 2000원 당 25-30%의 시멘트 조세를 부과하여 인상분을 지방세로 시군에 납부	강원 동해, 영월, 삼척, 옥계 등

※자료 : 손희준, "법정외세 도입방안", 「지방세」, 2005, 제2호(통권88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III. 신세원으로서의 수상시설물

1. 수상시설물의 정의

수상시설물’이란 수면 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자력이동력(自力移動力)이 없고 선박 등으로 견인하

여 수상에 고정하는 시설물로서, 현재 내수면이나 바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펜션, 수상방갈로, 수상좌대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단,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2. 충청북도의 수상시설물 현황

가. 저수지 목적외 사용현황

2010년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부의 저수지 목적외사용 계약현황을 보면 유료낚시업 49개소(832.8ha), 유선업 4개소(77.78ha), 양어장 1개소(1.33ha), 청소년교육, 수상스키 등 기타목적 3개소(54.54ha)등으로 총 57개소(966.45ha)로 파악 되었다. 세부내역은 [표 2]와 같다.

저수지 목적외사용 계약의 86%가 유료낚시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당수의 저수지에 수상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목적외사용 계약현황

구 분	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유료낚시터	49개소 (832.8ha)	1개소 (4.18ha)	7개소 (176.3ha)	2개소 (9.93ha)	8개소 (77.42ha)	8개소 (70.25ha)		1개소 (96.82ha)	7개소 (102.12ha)	15개소 (295.78ha)
유선업	4개소 (77.78ha)			1개소 (13.7ha)			1개소 (14.54ha)			2개소 (49.54ha)
양어장	1개소 (1.33ha)									1개소 (1.33ha)
기타	3개소 (54.54ha)					1개소 (37.07ha)		1개소 (15.97ha)		1개소 (1.5ha)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2010년 충북지부 저수지 목적외사용 계약현황

나. 낚시터의 관리 및 운영현황

수상시설물 설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낚시터이다. 수상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낚시관리 및 운영현황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전국 수상시설물을 파악한 결과, 2005년도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자료로 공개된 수상시설물은 2,057동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1년 현재 상당히 많은 수상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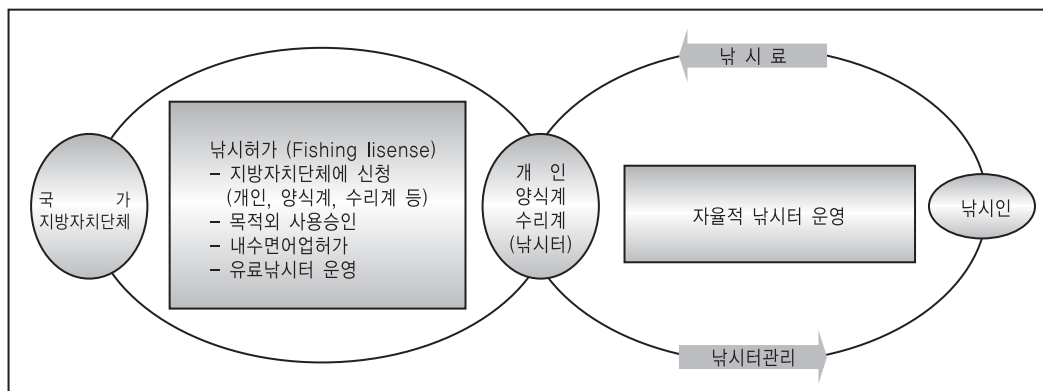
저수지나 바다에 수상시설물을 설치 시 시설물의 현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인·허가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허가 기관의 정확한 수상시설물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 내수면 낚시터관리 및 운영현황

저수지의 관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우로 이분화 되어 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의 공유수면의 경우는 개인이나 양식계, 수리계 등에게 내수면 어업허가나 목적외사용 승인을 하면, 허가 받은 관리자들이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자율적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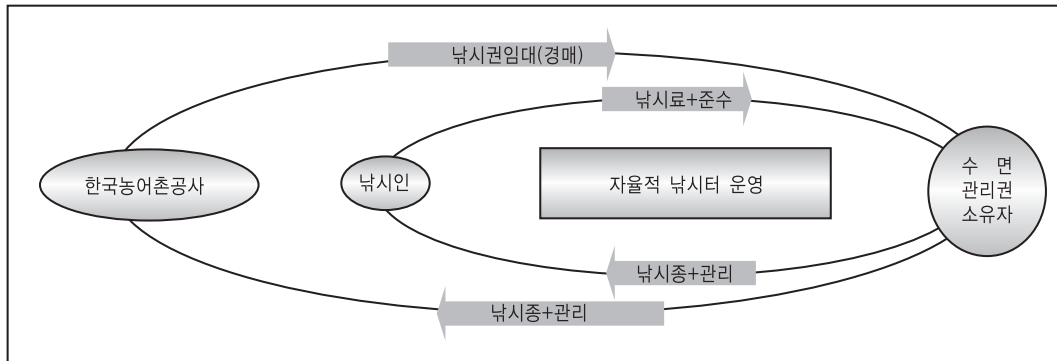
【그림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낚시터 관리 흐름도



※ 자료 : 국토해양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2005

비교적 규모가 큰 저수지의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면서, 공개입찰에 의하여 수면관리권을 부여하여 낚시터 등의 운영을 허가해 주고 있다. 수면관리권 소유자는 일반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낚시료를 받고 자율적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게 된다.

【그림 2】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낙시터 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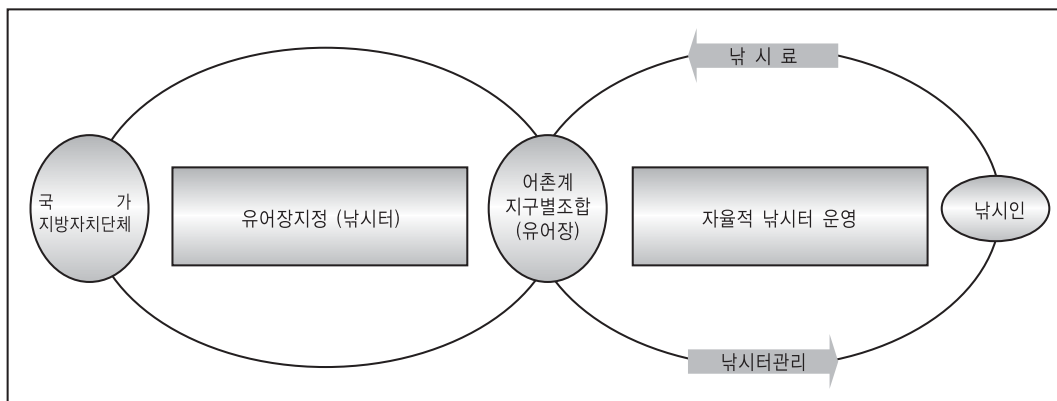
※ 자료 : 국토해양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낙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2005

2) 바다낙시터 관리 및 운영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낙시 운영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어촌계나 지구별 조합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유료낙시터 및 체험어장이고, 다른 하나는 낙시용 어선을 이용하는 선상낙시나 갯바위낙시이다.

후자의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 밖의 범주이므로 전자에 관해서만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어촌계나 지구별 조합에 낙시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관리주체는 일반 낙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낙시료를 받으면서 낙시터를 관리하게 된다.

【그림 3】 바다낙시터 관리 흐름도



※ 자료 : 국토해양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낙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2005

3. 수상시설물의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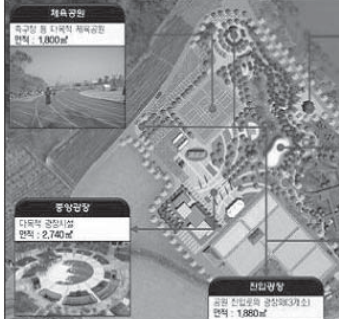
가.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시설물

- 괴산군 문광면 양곡저수지

양곡저수지는 은행나무 터널과, 저수지 아래에 유색벼로 그려지는 논그림으로 유명한 곳으로서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수상시설물인 수상좌대 5동이 설치되어 있다.

2011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테마공원사업 타당성 최종 검토결과 괴산시골절임배추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소금물을 이용한 내륙염전과 소금문화관, 소금생산과 신재생에너지 체험공간, 가족휴양 정원 등으로 구성되는 『빛과 소금 테마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시설물의 증설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림 4】 양곡저수지 · 논그림 · 『빛과 소금테마파크』

· 양곡저수지 - 위치 : 문광면 양곡리 4번지 - 면적 : 20.33ha - 현황 : 유료낚시터(수상좌대 : 5동)	
	· 유색벼 논그림(호랑이) - 위치 : 문광면 양곡저수지 아래 - 면적 : 0.3ha - 규격 : 가로50m * 세로60m ※ 2011년 시흥시에 로열티(1천9백만원)를 받고 논그림 형성기술 이전
· 『빛과 소금테마파크』 조성 - 위 치 : 양곡저수지 옆 - 면 적 : 26ha - 사업비 : 50여억원 - 내 용 : 소금문화관(0.74ha), 폐염수활용 소금생산체험공간(3.95ha), 신?재생 에너지 테마체험 빛 공원(2.2ha)등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우리도와 인접도인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는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수상시설물인 수상좌대를 계원 27명이 각각 10동씩 전체 270동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사진 1】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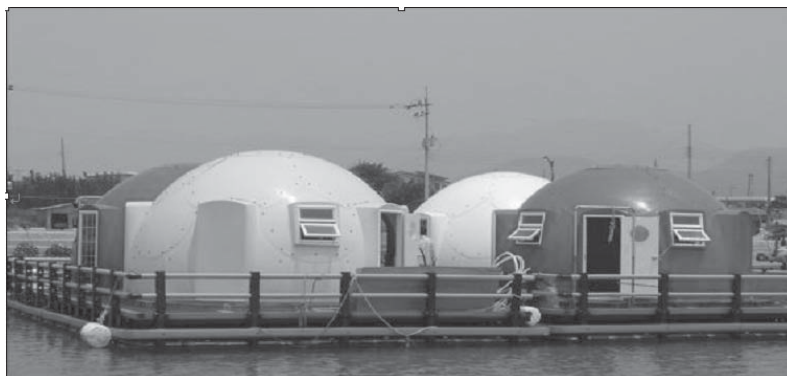


나. 바다 위에 설치된 수상시설물

- 사천시 어촌체험마을

바다 위 수상시설물로서는 사천시 어촌체험마을을 꼽을 수 있다. 사천시는 국도비 포함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어촌계에서 시범관리 하다가 2008년 개장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은 사천시를 시작으로 무안군, 진도군으로 확대되었다.

【사진 2】 사천시 해양펜션



IV. 수상시설물에 대한 과세방안

1. 현행 법령 검토

가. 지방세 과세대상 건축물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정의를 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유사형태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시설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 되어 있어야 한다. 수상시설물의 경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과정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되고, 수상시설물은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나. 과세제외의 문제점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상시설물이 형태·용도 및 취득비용 등에서 지상 건축물과 유사하면서도, 지상 건축물에 과세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예를 들어 내수면이나 바다연안에 위치한 펜션과 내수면이나 바다 위에 설치된 펜션을 비교하여 보면, 이용 상황이나 사용료 수준 등은 유사한데 전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후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표 3】 수상시설물 이용료 현황

유 형	인 원	이 용 료	
		평 일	휴 일
수상좌대	3인기준	50,000원	60,000원~70,000원
수상펜션	6인기준	70,000원~100,000원	100,000원~120,000원

※자료 : 진천 초평저수지 "C" 유료낚시터 홈페이지 참조

2. 과세방안 검토

가. 과세대상의 범주

수상시설물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주를 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정해 보았다. 수상시설물이 비록 직접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다 밑이나 연안의 토지에 와이어나 로프 등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형태나 사용목적 등에서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수상시설물에 대한 과세대상은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과 동일한 범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세자료 관리 방법

현행 규정상 수상시설물은 공유수면 목적의 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시 개소수와 규모만 신고하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관리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경우는 신규 또는 변경 신청시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설치실태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상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함으로써 수질오염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세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상 건축물에 버금가는 조건의 '수상시설물 설치허가(또는 신고)제'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과세표준액은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구조별 기준가격에 면적 및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고, 세율은 취득세의 경우는 현재 등기·등록의무가 없으므로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재산세는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법령 개정(안)

1) 지방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지 17. (생략) 〈신설〉	제6조 【정의】 ① _____ _____. 1. 내지 17. (현행과 같음) 18. “수상시설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자력이동력(自力移動力)이 없어 선박 등으로 견인하여 수상에 고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단,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_____ _____ _____, 이용회원권, 수상시설물 _____.
제8조 【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지 9. (생략) 〈신설〉	제8조 【납세지】 ① _____ _____. 1. 내지 9. (현행과 같음) 10. 수상시설물 : 시설물 설치 소재지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지 7. (생략) 〈신설〉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_____ _____. 1. 내지 7. (현행과 같음) 8. 수상시설물 : 1천분의 20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지 5. (생략) 〈신설〉	제104조 【정의】 _____ _____. 1. 내지 5. (현행과 같음) 6. “수상시설물” 제6조제18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_____ _____선박, 수상시설물, _____ _____.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내지 5.(생략) 〈신설〉. 제110조【과세표준】 ① 내지 ②.(생략) 〈신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지 5.(생략) 〈신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지 5.(생략) 〈신설〉.	제108조【납세지】 _____. 1. 내지 5.(현행과 같음) 6. 수상시설물 : 시설물 설치 소재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내지 ②.(현행과 같음) ③ 수상시설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_____. 1. 내지 5.(현행과 같음) 6. 수상시설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지 5.(현행과 같음) 6. 수상시설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내지 11.(생략) 〈신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① _____. 1. 내지 11.(현행과 같음) 12. 수상시설물 : 건축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구조별 기준가격에 면적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에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3) 2011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XII. 수상시설물(신설)

가. 용어정의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자력이동력(自力移動力)이 없어 선박 등으로 견인하여 수상에 고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단,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나. 종류

수상펜션, 수상방갈로, 수상좌대 등이 있다.

다.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구조지수	내용년수	감가방법	감가율	잔존율	비 고
FRP	120	40	정액법	0.016	10%	
목구조, 철골조	100	40	정액법	0.02	10%	
수상펜션	6인기준	120	120	120	10%	
목조	80	30	정액법	0.03	10%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60	20	정액법	0.045	10%	
기타조	40	10	정액법	0.09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구 조 별	구조지수	단위	기준가격	비 고
FRP	120	1㎡당	696.00	
목구조, 철골조	100	1㎡당	580.00	
목조	80	1㎡당	464.00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60	1㎡당	348.00	
기타조	40	1㎡당	232.00	

※ 기준가액은 구조지수 100을 기준으로 1㎡당 580,000원으로 한다.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text{시가표준액} = \text{구조별 } \text{m}^2 \text{당 기준가격} \times \text{면적}(\text{m}^2) \times \text{잔가율}$$

〈 산출예시 〉

- 2007년도에 조립식판넬조, 면적 18m²의 수상펜션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1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45
- 잔가율 : $1 - (0.045 \times 5\text{년}) = 0.775$
- m² 기준가격 : 348,000원 $\times 18\text{m}^2 = 6,264,000\text{원}$
- 시가표준액 : 5,864,400원 $\times 0.775 = 4,854,600\text{원}$

3. 세수추계

가. 수상시설물 세수규모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유행하는 돛형식과 전통적 형식의 수상시설물에 대하여 개별물건별로 세수규모를 추계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표 4】 물건별 취득가액

(단위 : 천원)

유형	형 태	규 격	인 원	취득가액	비 고
A형		18m ²	4인용	7,500	선택사양 미적용 가 격
B형		14.3m ² 20.9m ² 29.2m ²	4인용 6~10인용	8,000 10,000 11,000	
C형		16m ² 50m ²	4인용 6~8인용	80,000 130,000	풀옵션 가 격

※ 자료 : 'A' 사, 'E' 사 홈페이지

【표 5】 수상시설물 1동당(4인용 기준) 세수규모

(단위: 천원)

유형별	취득가액	취득세	재산세	비 고
A형	7,500	150	18	
B형	8,000	160	20	
C형	80,000	1,600	200	

나. 수상시설물 세수규모

내수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수상시설물은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A형이 대부분이다. 한국농촌공사와 목적외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군 문광면 소재 양곡저수지와 진천군 미호저수지(초평저수지)에 설치된 수상시설물과 우리도와 인접도인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의 세수규모를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양곡 · 미호 · 예당저수지 세수규모

(2010년기준)

(단위: 동, 천원)

저수지명	수상좌대수	취득세	재산세	비 고
양곡저수지	5	750	90	
미호저수지	164	24,600	2,952	
예당저수지	270	40,500	4,860	

※ 자료: 수상좌대수 - 한국농어촌공사 협조

IV. 결 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 아울러 자주재정이 실현되어야 하며, 자주재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주재원의 확보를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입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방세분야에서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시도는 경직된 법령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세목의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건을 기존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최근 경마·경륜·경정·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저세 과세대상물건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광역자치단체와 체육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국회통과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상시설물을, 현행 지방세관련 법령상 건축물과 유사한 범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물건으로 추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사한 구조로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이 위치하는 곳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 것은 과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 위배의 소지가 있다.

자주재원확보 측면에서도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레저수요의 증가에 따라 현재상태 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분별히 난립하고 있는 수상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자연환경 및 재난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레저산업의 발달에 따른 신세원 발굴의 동기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철영 · 박일흠, “지방세의 신세원 개발을 통한 세수증대방안”, 2003, p161
국토해양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2005, p76~77, p90
남항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지방세』, 2006, 제5호, (통권97호), p5
박광배, “충남자체재원 확충의 실태와 개선방안 “, 『충남발전연구원』 2006, p67~68
서정섭,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 세미나자료』, 2010, p111~113
손희준, “법정외세 도입방안 “, 『지방세』, 2005, 제2호, (통권88호), p35
충청북도, “2011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감사인 등록제 유감

고영일
인세회계법인 이사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기업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회계업계에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족하여 운영 중인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이 큰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외부감사는 높은 수준의 내부품질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회계법인 내부에 감사업무 외의 별도의 지원 부서를 두려면 회계법인 규모가 기본적으로 상당 수준은 돼야 하며,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회계법인 등은 상장회사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혼자서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기 힘들면서도 코스닥상장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었던 감사인들의 업무영역이 좁아지고, 상장법인 회계감사시장은 중·대형 회계법인에 더욱 집중되는 한편 소규모 회계법인은 등록 기준에 맞춰 인수합병을 통해 재편하거나 상장사 감사업무를 아

에 하지 않는 등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협의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기업을 포함해 상장된 법인 수는 모두 1,751개로, 2011년 3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중 971개를 소위 '빅펌'이라 부르는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맡았다. 이는 전체 감사 법인 수의 55.44%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123개 중 20여곳은 상장법인을 아예 한 곳도 수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반연합회는 "지금까지 대형 부실감사를 일으킨 회계법인이 누구였느냐. 대형 회계법인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많았다"며 "당국에서 추진하는 등록제가 조직을 이분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할 수 있는데 여건상 못하는 경우와 아예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막아놓는 것은 분명 다르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중소 회계법인의 분위기도 감사반연합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빅펌' 등 대형 회계법인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대형 회계법인들은 등록제에 거부감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미비한 중소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제 시행이 고객들에게 자격 미달로 비춰지는 등 외부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주어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등록제 추진에 앞서 감사품질에 문제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장회사 감사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회계업계는 1,751개 상장회사 중 대다수가 12월 결산법인으로 감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관에 일부 대형 회계법인만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면 업무과부하로 오히려 감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회계감사를 하려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2년의 수습 등을 통해 감사인 자격만 갖추면 되지, 감사인 자격 외에 또 다른 자격을 갖춰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의 배경이 되는 회계감사 관련 제도와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를 보면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관련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설립요건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사원과 10인 이상의 소속공인회계사,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회계법인이나 타 감사반에 소속되지 않은 개업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하나,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재무제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조서 작성 보존, 감사보고서 감리,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인 품질관리 감리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감사보고서 감리와 품질관리 감리는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증권선물위원회 위탁)에서 강도 있게 진행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실감사를 방지 또는 제재하기 위한 제도, 관리시스템과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일류법인과 그렇지 못한 이삼류법인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인회계사

법」에 규정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감사인 등록제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인 것이다.

중소 회계법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회계감사 수임제도와 회계감사 현실에 있다.

1980년12월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유수임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채택해 오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지배주주와 임원주주를 제외한 최대주주 2인, 지배주주를 제외한 최대 채권금융기관 2인, 지배주주를 제외한 최대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감사 1명과 사외이상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순수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피감사인인 기업이 '갑'이고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을'인 관계가 형성되어 회계감사 계약시부터 부실감사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는 셈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최대주주, 최고경영자, 회사 실무책임자 등 소수에 의해 사전 결정된 후 형식상의 서류 절차만을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수임제란 감사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회사 스스로 판단해 적당한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 수수료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으로 정하라는 일견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수임제 하에서 대다수의 회사들이 선호하는 외부감사인은 수수료를 적게 받고 적당히 회계분식을 눈감아줄 수 있는 회계법인이다. 그리고 자유수임제는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

수수료를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의 자율 합의에 의해 정하게 되므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절대적으로 많고 피감사회사의 수가 한정되고 정제되어 있는 현실에서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 계약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미국에서도 엔론, 월드컴 부실감사 사태 등을 통해 자유수입제에 대한 환상은 처참히 깨졌고 그 결과 사베인-옥슬리법 등 여러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인의 컨설팅 업무 제한, 감사업무품질관리제도 구축 운영 등 미국과 유사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상장 대기업이더라도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본주의 기업문화와 선진 경영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고 회계 투명성과 감사인의 수준이 세계 최고인 미국식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일선 대기업과 코스닥 업체들의 분식회계가 횡행하는데도 무늬만 회계감사를 벌이는 행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소 회계법인들의 경우 사실상 회계감사를 부탁하는 기업들에 '울'의 역할을 하고 있어 부실회계 의혹이 있을 경우 밝히기가 어렵고 대형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사)들의 경우에도 계속적인 감사수입 여부가 자신의 승진, 수입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므로 회사의 분식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두 군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은 은행의 분식결산을 적발하고도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절차를 포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부산저축은행의 감사 등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담당 회계사들에게 분식결산 사실을 누락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감사회사와 회계법인 간 감사보고서를 암묵적으로 공모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사라지기 힘들다. 회계법인이 엄격한 감사를 할수록 향후 감사업무를 수주하기 어렵게 되는 마케팅 논리 때문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감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위험이 높아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이익 기여도가 낮은 피감사회사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하기가 중소 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소위 영양가 있는 회

사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엄격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회사 요구에 반하는 감사의견을 소신있게 표명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부에서는 부실감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들이 직업 윤리 의식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감리 등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며 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감사인 등록제와 같이 법적 규제 장치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및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간의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한 논란은 각기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다.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회계감사의 본래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차원에서 감사인 등록제 보다 시급하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현행 회계감사 자유수임제도에 대한 소견을 간략히 피력하고자 한다.

최소한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회계법인을 일정기간 마다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제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제가 있듯이 지정된 감사인에 대해 피감사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감사인을 재지정하는 감사인 기피제 등의 예외적 보완사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감사인 지정제를 근간으로 해서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 우선순위와 혜택을 차별화 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과 감사 신뢰성 강화에 즉각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유수임제에 부수되는 사항이지만 자유수임제 하에서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정부투자기업, 시중은행, 극소수 대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감사수수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여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보통 최저가를 제시한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해외 채권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나 해외에서 IR이 필요한 회사들은 미국의 유력 회계법인과 멤버십 네트워크를 가진 회계법인 중에서만 선택해야 되는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사